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10. 21 선고 2021가단9466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박영만

피 고 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10. 21.

주 문

1.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의 2021. 3. 3.자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소외 B에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21. 3. 3. 접수 제34617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사 김봉규

청 구 원 인

1. 원고의 지위

원고는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유동을 원활하게 함과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입니다.

2. 원고의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

가.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

원고는 'C' 이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소외 B의 보증의뢰에 따라 소외 B가 소외 기업은행(이하 '소외 은행' 이라 합니다)으로부터 대출받고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하여 '아래' 와 같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약정을 하고서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 소외 B는 위와 같이 발급받은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소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갑제1호증 - 신용보증약정서)

- 아 래 -

2020. 4. 24.자 신용보증약정 - 갑제1호증

보증번호 : D

보증금액 : 25,000,000원

보증상대처 : 기업은행 서시화기업금융지점

보증기한 : 2021. 4. 23.

대출예정금액 : 25,000,000원

보증비율 : 100%

피보증인 : B

나. 사전구상권 규정

그 외에 이 사건 소송과 관련하여, 위 신용보증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제5조(사전구상)

- ① 본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재단이 사전통지나 독촉없이 사전구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이의없이 사정상환채무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1. 제4조(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한 때
 2.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결정 또는 경매신청이 있는 때
 3.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의한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때
 4.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였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때
 5. 폐업을 하였거나 조업중단 등으로 계속적인 영업이 곤란한 때
 6.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을 사유가 발생한 때
 7.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정보·대위변제(대지급금포함)정보·부도정보·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기록정보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
 8. 재단이 이 약정에 의한 신용보증의 채권자와 다른 신용보증의 채권자 중 어느 하나의 채권자로부터 신용보증계약에 의한 신용보증사고통지 또는 보증채무이행청구를 받은 때

9. 법인기업의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 개인기업의 공동경영자(실제경영자 포함)에 대하여 위 제2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이로 인해 본인의 신용상태가 악화된 때
10. 본인이 연대보증한 신용보증기업에 대하여 재단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사유가 발생한 때
11. 전 각호외에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때

3. 원고의 소외 B에 대한 (사전)구상금채권

가.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의 주채무자인 소외 B가 소외 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때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이를 대위변제하고 신용보증약정상의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2) 그런데 소외 B는 2021. 4. 8.자로 ‘이자연체’를 사유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켜, 소외 은행은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발생사실을 통지함에 따라 소외 B는 부실처리되었고, 이후 소외 은행은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이행을 요청하였습니다.(갑제2호증 - 대위변제원장)

(3) 이에 따라 원고는 소외 B를 대위하여 2021. 6. 23.자로 소외 은행에 원금 25,000,000원과 이자 122,260원의 합계 25,122,260원을 변제하였습니다.(갑제3호증 - 대위변제증서)

다. 대지급금 (금1,777,180원)

한편, 소외 B는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하면서 원고의 구상권 행사 또는 보전에 필요하여 가지급한 보험료 및 법적 절차비용 등 모든 부채채무금도 함께 각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원고가 이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면서 소요된 비용은 1,777,180원입니다.(갑제4호증 - 구상채권내역명세)

라. 추가보증료 (금45,200원)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 소정의 보증료는 신용보증을 받은 소기업 등으로부터 보증금액에 대하여 신용도 등을 참작하여 소정의 비율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고, 소외 B는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보증료 등을 납부하기로 약정을 하였던 바, 소외 B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추가보증료는 45,200원입니다.(갑제4호증 - 구상채권내역명세, 갑제1호증 - 신용보증약정서 제3조 보증료 등의 납부)

마. 원고의 소외 B에 대한 구상금 채권

따라서, 소외 B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의 주채무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의 대위변제구상권잔액 25,122,260원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의 대지급금 1,777,180원 및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의 추가보증료 45,200원의 합계 26,944,640원 상당의 구상금채권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에 원고는 현재 소외 B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2021차전7915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상태입니다.(갑제5호증 - 대법원사건 일반내용 및 진행내용)

4. 소외 B와 피고 A 사이의 매매예약계약

원고의 신용보증약정상의 채무자인 소외 B는 피고 A에게 2021. 3. 3.자로 별지 기재 부동산(고양시 일산서구 E F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함)에 대하여 매매예약

계약을 하였고, 그에 따라 2021. 3. 3.자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에 접수 번호 제34617호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습니다.(갑제6호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5. 손해행위

가. 피보전채권

원고와 소외 B에 대하여 상술한 바와 같이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해행위에 있어 피보전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①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에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②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③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 29916판결 등).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신용보증약정 제5조에 따라 원고의 채무자인 소외 B가 ‘이자 연체’를 사유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킨 2021. 4. 8.자로 사전구상권을 갖게 된 바, 원고의 채무자인 소외 B와 피고 A이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한 것은 2021. 3. 3.이나, 그 당시에 원고와 소외 B 사이에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약정이 성립되어 있었고, 이 사건 계약일로부터 불과 약 1개월 후인 2021. 4. 8.에 소외 B에게 사전구상권의 원인이 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고, 이후 2021. 6. 23.자에 대위변제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원고의 사전구상권은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갑제2호증 - 대위변제원장)

나. 소외 B의 채무초과 상태

소외 B는 매매예약계약 및 근저당권등기 경료일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적극재산' 이 없었던 반면, '소극재산' 으로는 원고의 신용보증에 따른 대출채무 이외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G은행의 채권최고액 436,7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채권최고액 상당의 대출이 존재하였을 거라 보이고, H카드의 10,552,488원 상당의 카드대금과 I 주식회사으로부터의 25,641,090원 상당의 채무가 각 존재하였는 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습니다.(갑제6호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다. 사해행위

대법원은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어떤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하려면 그 행위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상태가 초래되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7783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 당시 소외 B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위와 같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소외 B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서 피고 A에게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 바, 이로써 다소나마 남아있었던 적극재산을 감소시킴으로써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소외 B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한 것은 명백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라. 사해의사

1)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인데,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한 것입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판결)

소외 B와 피고 A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계약을 할 당시에는 이미 소외 B는 채무초과 상태였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소외 B는 피고 A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해 줌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부족을 초래하여 채권자들이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소외 B의 사해의사는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2)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이 되면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6. 결론

따라서, 소외 B와 피고 A 사이의 2021. 3. 3.자 매매예약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2021. 3. 3. 접수 제34617호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를 통하여 경료된 피고 A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별지]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동

[도로명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 번호 :

구 조 : 월근콘크리트구조

면 적 : 120.4817㎡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 59023.9㎡

대지권 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 비율 : 59023.9분의 21.7512

- 이 상 -

